

2004. 12

제115회 제2차 정례회중 산건위 회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04. 12. 1.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4. 12. 16

II.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1. 총괄

(단위:천원)

구분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172,813,077	202,598,342	29,785,265	17.2
일반회계	151,525,865	179,990,286	28,464,421	18.8
특별회계	21,287,212	22,608,056	1,320,844	6.2

2. 산업건설위원회 내역(일반)

(단위:천원)

구분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산업건설위원회	72,459,582	99,819,443	27,459,861	37.9
농정과	11,274,273	17,048,040	5,873,767	52.6
경제과	4,210,463	4,955,733	745,270	17.7
환경녹지과	13,285,709	17,726,291	4,440,582	33.5
건설과	31,766,090	45,528,661	13,762,571	43.3
지역개발과	7,752,107	10,030,630	2,278,523	29.4
농업기술센터	2,254,020	2,255,020	1,000	0.0
상수도사업소	1,916,920	2,275,068	358,148	18.7

II. 실과별 검토사항

[농정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	11,174,273	17,048,040	5,873,767	52.6

- 농정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계획취소,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일부 감액편성 부분이 있음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FTA과수기금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FTA기금사업 5,243,397천원**
 - : 생산기반정비 2,455,897천원, 생산현대화 2,787,500천원(p150)
 - 연말 예산계상으로 집행이 곤란하여 예산액 전액이 명시이월 조치됨.
 - FTA 기금사업이 대부분 국도비로 지원되더라도 예산액중 군비 부담금의 규모가 커 지방재정에 향후 압박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됨.
 - <편성액중 군비 부담액>
 - 2004년도 1,130,959천원, 2005년도 1,067,412천원
 -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비80%, 도비8%, 군비12%인 반면, 생산현대화사업은 국비50%, 도비20%, 군비 30%로 동사업에 대하여도 생산기반정비사업처럼 국비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멕시코와의 FTA 타결직후 과수농가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사전 충분한 계획없이 시행함에 따라 주종 사업인 사과묘목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공급부족과 가격 폭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포도비가림시설지원사업 △150,000천원(p151)

- 당초 군비로 편성된 것을 FTA기금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감액조치 하려는 것임.

향후 과수분야에 대하여는 대규모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분야 지원사업은 비록 국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화훼시설 도비보조사업 658,600천원(p151)

-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보온커튼시설사업은 화훼농가의 연료비가 절감되도록 연내에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경제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55)	4,210,463	4,955,733	745,270	17.7
농공단지조성특별	1,690,138	1,690,138	0	0
주차장관리특별	624,245	624,245	0	0

○ 공영버스구입비 25,058천원(p159)

- 당초예산에 2대 구입을 위한 국비(대당 18백만원) 보조사업이나 계획차량이 단종됨에 따라 기중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으로 국비보조금은 18백만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전액 군비로 충당하게 된 것임.

동 사업비는 명시이월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연내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구입 2,000천원(p159)

- 현재 주차단속용으로 일반카메라(2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주차단속요원 충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는 것임.

그러나 주차단속 현장사진은 정밀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하여 가급적 많은 수량의 카메라를 확보 될 수 있도록 일반성능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 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으나 당초 계획된 사업변경 또는 요인 미발생으로 134,335천원을 감액조치하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

○ 주차장관리특별회계

- 자가주차장설치보조사업비 5천만원중 2백만원 집행으로 잔액은 예비비에 계상

[환경녹지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63)	13,285,709	17,726,291	4,440,582	25.1

-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은 태풍피해 사유림복구비 (15억 69백만원),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20억원), 소각시설국비 지원(6억 3천만원) 등에 기인함.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633,000천원(p165)
 - 동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70억원중 국비지원 21억원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집행부에서는 민간업체에 성공불제 조건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어 향후 성공불제 계약이 체결되면 반납하여야 할 것임.(명시이월 조치)
- 생활공원조성사업 2,000,000천원(p169)
 -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 예산으로 지방 재정 투융자심의 신청시 패널티를 면하기 위하여 1회 추경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한 것임.
- 생활주변나무심기 명시이월 : 3,031백만원중 1,652백만원(p255)
 - 거창읍진입도로변 농로개설사업 편입토지의 보상이 되지 아니 하여 명시이월조치하는 것으로 보상대상자 32명중 12명만 계약 체결한 것으로 협의거부사유도 보상가격불만인 것으로 파악됨. 군에서 제시한 보상가격이 평당 12~22만원 정도로 적정수준의 보상가격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하여야 할 것임.

[건설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73)	31,766,090	45,528,661	13,762,571	43.3

-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은 태풍“메기”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에 기인함.
(군비부담금 2,355,077천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사용보고)
- 각종 양여금사업 예산삭감
 -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과다 반영된 양여금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게 됨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양여금 감소내역>
 - 오지종합개발사업 524,252천원(도비와 군비로 316백만원 보전)
 - 도로관리 양여금 보조사업 1,427,000천원
 - 소하천정비사업 178,000천원(군비 104백만원 보전)

[지역개발과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83)	7,752,107	10,030,630	2,278,523	29.4
주택사업특별(p212)	79,400	76,050	△3,350	△4.2

-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임.
 - 금회 예산반영된 사업은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전체 명시 이월 조치됨.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이자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감소한 것으로 채무자중 부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장기체납으로 채무상환이 불가할 경우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87)	2,254,020	2,255,020	1,000	0.0

○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은 업무추진비 1백만원 편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단위:천원)

회 계 명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P193)	1,861,920	2,230,958	369,038	16.5
수질개선특별(p231)	6,539,986	7,855,477	1,315,491	20.1

-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의 증가요인은 태풍“메기”피해 상하수도 복구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기인함.
-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의 증가요인은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기인함.
대상사업들은 연내사업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됨.